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0. 20.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288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7. 2. 강남구청장(정책홍보실)

나. 상정의결

-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9. 17.)
“심사보류”
- 제2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10. 20.)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신동명)

가. 제안이유

- 온라인 홍보 매체 다변화에 대응하여 뉴미디어 분야의 신매체 및 신규아이템을 발굴·활용하는 등 소셜미디어 부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함.

나. 주요내용

- 강남구 온라인 소셜미디어의 운영(안 제3조)
- 게시물의 유지·관리(안 제4조)
-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안 제5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0. 5. 29.~ 6.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현재 구정홍보의 주요수단은 강남구청뉴스 등 지면을 활용한 소식지 배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주요 홍보 및 정보제공 수단으로 활용 중이나 개인 모바일을 통한 정보전달 수단이 일반화되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토티, 트위터, 블로그 등 SNS¹⁾가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우리 구에서도 SNS를 운영 중이거나 관련규정이 없어 단순한 정보 게시와 전달수단으로 운영되는 한계로 활용 시 제약이 따르는 바 소셜미디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 구민뿐만 아니라 참여자에게 우리 구정에 대한 행정정보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제공하고 민관 소통을 위하여 SNS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시상금 또는 경품 제공이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중 ‘강남구의 소셜미디어’ 를 ‘강남구가 활용하는 소셜미디어’ 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1) SNS: ‘Social Network Service’ 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서로의 생각이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를 말함.

- 안 제2조(정의)제1호에서는 ‘소셜미디어’²⁾를 정의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어 상호 중복되는 조문이 있는 바 ‘홈페이지’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또한 조문 중 ‘공식적으로 운영’을 ‘공식적으로 활용’으로,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는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포함한 매체를 말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2호의 규정 중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된’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된’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의 제목을 ‘(소셜미디어의 활용)’으로 하고, 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활용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4조(게시물의 유지·관리)제2항에서는 게시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제3조제2항제4호에 구민의견 개선 규정이 있는 바 이 게시물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3)에 따른 건의민원, 기타민원 등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게시물인 경우에는 삭제나 차단할 수 없어 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민참여와 상호 소통이 목적임을 감안할 때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4)와 같이 관련규정을 마련하거나 예시5)와

2) 소셜미디어(Social Media): 다수의 의견, 경험, 관점 등의 집단지능(Collective Knowledge)으로부터 정제되어 송출되는 매체. 소셜미디어(Social Media)는 그 자체가 일종의 유기체처럼 성장하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의 일반적인 매커니즘이 동작하지 않고 소셜미디어의 대표적인 예로는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인스턴트 메시지 보드, UCC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공유되는 대상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가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같이 민원처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안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사업)제1항에서는 이용자들 상호 간의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청의 홍보위주로 열거하고 있으나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 등 상호 소통을 위한 규정은 없다고 보여짐. 한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⁶⁾에서는 의견수렴 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⁷⁾도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하겠음. 제2항에서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소셜미디어에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자에게 시상금, 경품, 제작비 등 소정의 보상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참여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⁸⁾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됨. 다만, 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강남구청장’ 이 아닌 ‘강남구’ 명의로 제공하여야 할 것임. 한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⁹⁾에서는 참여행사 지원기준이 있는 바 소셜

5) 예시

제4조(게시물의 유지·관리 등) ③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등에 연동하여 운영한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견수렴 창구 운영)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이용자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인터넷 투표·설문조사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창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제도의 정비, 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7)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내용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시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과 관련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이의 활용, 민간 협력 마케팅 등을 통한 이벤트 및 행사 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제공의 확산
3. 서울 도시브랜드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민원실 운영 등 통합민원 처리 및 이의 품질관리 등 민원행정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9)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홈페이지 이용 참여행사 운영)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

미디어도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그 밖에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 중 ‘통해’ 는 ‘통하여’ 로, 제3조제1항 중 ‘위해’ 는 ‘위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안 부칙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를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예시¹⁰⁾와 같이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입법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행사를 운영하고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등을 별표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

[별표]

홈페이지 이용 참여행사 운영 지원 기준 (제12조 관련)

대 상	방 법	내 용
홈페이지 이용 참여행사 참가자	참가자/당첨자	50,000원 이내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등

10) 부칙

제2조(소셜미디어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가 공식적으로 활용 중인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활용하는 소셜미디어로 본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현재 홈페이지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구정 홍보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 중에 있는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 코로나 이후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운영과 더불어 유튜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유튜브의 경우 2013년에 채널을 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최근에는 틱톡과 같은 여러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어 해당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임.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288호

제안일자 : 2020.10.20.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회원증 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 입법형식 요건에 맞게 별지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회원자격 관련 조항 신설(안 제21조의 2)
- 회원가입 관련 조항 신설(안 제21조의 3)
- 회원자격 상실 관련 조항 신설(안 제21조의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강남구의” 를 “강남구가 활용하는” 으로, “관리·운영하여” 를 “관리하여” 로 한다.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의의 뜻은 다음 각 호와” 를 “용어의 뜻은 다음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통해” 를 “통하여” 로, “운영하는” 을 “활용하는” 으로, “홈페이지, 블로그” 를 “블로그” 로, “매체” 를 “플랫폼을 포함한 매체”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정보통신망” 을 “소셜미디어” 로 한다.

안 제3조의 제목 “(소셜미디어의 운영)” 을 “(소셜미디어의 활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 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 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통해” 를 “통하여”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등에 연동하여 운영한다.

안 제5조제3항 중 “통해”를 “통하여”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셜미디어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가 공식적으로 활용 중인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활용하는 소셜미디어로 본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u>강남구의 소셜미디어</u>를 보다 효율적으로 <u>관리·운영하여</u>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u>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u>운영하는</u>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플러스,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와 <u>홈페이지, 블로그</u> 등 온라인상의 <u>매체</u>를 말한다.</p> <p>2. “게시물”이란 <u>정보통신망</u>에서 사용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작성된 것을 말하며,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그에 대한 의견 및 그와 유사한 것을</p>	<p>제1조(목적) ----- 강남구가 <u>활용하는</u> ----- 관리하여 ----- ----- ----- ----- ----- ----- -.</p> <p>제2조(정의) ----- 용어 ----- -----<u>다음과 같다.</u>-----</p> <p>1. ----- <u>통하여</u> ----- ----- ----- <u>활용하는</u> ----- ----- ----- <u>블로그</u> ----- ----- <u>플랫폼을 포함한 매체</u> ----- -----.</p> <p>2. ----- <u>소셜미디어</u> ----- ----- ----- ----- ----- -----.</p>

포함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에게 정보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

제3조(소셜미디어의 활용) ① -----

-----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

② (원안과 같음)

제4조(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
----- 통하여 -----

-----.

② (원안과 같음)

③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민원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등에 연동하여 운영한다.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② (원안과 같음)
③ -----

----- 통하여 --

디어를 통해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셜미디어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가 공식적으로 활용 중인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활용하는 소셜미디어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변 호	288
------------	-----

제출년월일 : 2020. 7. 2.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정책홍보실

1. 제안이유

온라인 홍보 매체 다변화에 대응하여 뉴미디어 분야의 신매체 및 신규
아이템을 발굴·활용하는 등 소셜미디어 부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
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 가. 강남구 온라인 소셜미디어의 운영(제3조)
- 나. 게시물의 유지·관리(제4조)
- 다.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20.5.29. ~ 2020.6.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소셜미디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플러스,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2. “게시물”이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 (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작성된 것을 말하며,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그에 대한 의견 및 그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정보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예술·관광·체육·건강·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
4. 구민의견 개선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
4.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판·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예술·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 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거나 게시물 제작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온/오프라인)
- 영상크리에이터 촬영 편집에 따른 제작비 일부 지원(온/오프라인)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합계
구분							
세입							
	홈페이지	7,400	7,400	7,400	7,400	7,400	37,000
세출	크리에이터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소계(b)	49,400	49,400	49,400	49,400	49,400	247,000

3.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합계
구분							
국비							
시비							
구비		49,400	49,400	49,400	49,400	49,400	247,000
기타							
합계		49,400	49,400	49,400	49,400	49,400	247,000

4. 덧붙이는 의견 : 해당 연도별 이벤트 성격에 따라 유동적인 예산 반영이 있을 수 있음

5. 작 성 자 : 정책홍보실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장용수